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1~11p 문제편 번호 : 15	문제-보기(지문)	①~③ 생략 ④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법하다. ⑤ 생략	①~③ 생략 ④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 적법하다. ⑤ 생략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문제편 17~17p 번호 : 27	문제-보기(지문)	①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. ②~⑤ 생략	①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 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 더라도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. ②~⑤ 생략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23~23p 문제편 번호 : 38	문제-보기(지문)	①~③ 생략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생략	①~③ 생략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되,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생략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
정답 및 해설편 36~36p 번호 : 27	해설	① (○)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, /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, /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, /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(대판 2006.5.12. 2004후2529). ②~⑤ 생략	① <u>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상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은 자라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.</u> 상표법 제100조(전용사용권·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<u>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</u> 1. <u>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</u> ·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. <u>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·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</u> ② <u>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.</u>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·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. 10. 1.〉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_오류																						
정답 및 해설편 42~42p 번호 : 32	해설	③ (○)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·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,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·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/ 카탈로그의 배부범위,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·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, / 한편 의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(註)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규정의 취지상 명백하다(대판 1998.9.4. 98후508). 디자인보호법 제33조(디자인등록의 요건)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 1.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(公知)되었거나 공연(公然)히 실시된 디자인 2.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(公衆)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	③ (○)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(대판 2009.5.14. 2008후5083).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_오류																						
52p 문제내 표 번호 : 11	문제-본문	<table><tr><td>t(min)</td><td>0</td><td>6</td><td>12</td><td>24</td></tr><tr><td>p(atm)</td><td>1.6</td><td>2.40</td><td>2.80</td><td>3.0</td></tr></table>	t(min)	0	6	12	24	p(atm)	1.6	2.40	2.80	3.0	<table><tr><td>t(min)</td><td>0</td><td>6</td><td>12</td><td>18</td><td>24</td></tr><tr><td>p(atm)</td><td>1.60</td><td>2.0</td><td>2.4</td><td>2.8</td><td>3.2</td></tr></table>	t(min)	0	6	12	18	24	p(atm)	1.60	2.0	2.4	2.8	3.2
		t(min)	0	6	12	24																			
p(atm)	1.6	2.40	2.80	3.0																					
t(min)	0	6	12	18	24																				
p(atm)	1.60	2.0	2.4	2.8	3.2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문제 표 오류				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55p 번호 : 17	문제-표	<table><tr><td>착이온</td><td>$[MCl_4]^{2-}$</td><td>$[M(H_2O)_6]^{3+}$</td></tr><tr><td>구 조</td><td>정사면체</td><td>정팔면체</td></tr><tr><td>출전자 수</td><td>2</td><td>0</td></tr></table>	착이온	$[MCl_4]^{2-}$	$[M(H_2O)_6]^{3+}$	구 조	정사면체	정팔면체	출전자 수	2	0	<table><tr><td>착이온</td><td>$[MCl_4]^{2-}$</td><td>$[M(H_2O)_6]^{3+}$</td></tr><tr><td>구 조</td><td>정사면체</td><td>정팔면체</td></tr><tr><td>출전자 수</td><td>2</td><td>-</td></tr></table>	착이온	$[MCl_4]^{2-}$	$[M(H_2O)_6]^{3+}$	구 조	정사면체	정팔면체	출전자 수	2	-
착이온	$[MCl_4]^{2-}$	$[M(H_2O)_6]^{3+}$																			
구 조	정사면체	정팔면체																			
출전자 수	2	0																			
착이온	$[MCl_4]^{2-}$	$[M(H_2O)_6]^{3+}$																			
구 조	정사면체	정팔면체																			
출전자 수	2	-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문제 표 오류																		
64p 선지 번호 : 39	문제-보기(지문)	[문제편] 64p, 39번 ① 남서쪽, C [정답 및 해설편] 102p 39번 초승달(삭 이후의 waxing crescent)은 해가 진 직후 서쪽하늘(대체로 남서쪽)에서 보인다. 그림에서 초승달에 해당하는 위치는 C(합삭 위치 오른쪽 아래, 초승달 → 상현달로 진행되는 구간)이다.	[문제편] 64p, 39번 ① 남서쪽, B [정답 및 해설편] 102p 39번 초승달(삭 이후의 waxing crescent)은 해가 진 직후 서쪽하늘(대체로 남서쪽)에서 보인다. 그림에서 초승달에 해당하는 위치는 B(합삭 위치 오른쪽 아래, 초승달 → 상현달로 진행되는 구간)이다.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선지오류																		
문제편 78~78p 번호 : 20	문제-보기(지문)	②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.	②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.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																		
94p 2~5줄 문제 해설 번호 : 11	해설	$t = 0$에서 $p = 1.60$$t = 6$에서 $p = 2.40$ 중간인 $t = 3$에서 p는 산술평균값인 2.0 $p_A(3min) = 2p_0 - p(3) = 1.2 atm$ A의 소비량 = $1.6 - 1.2 = 0.4mol$ B의 생성량 = $\frac{3}{2} \times A$의 소비량 = $0.6mol$ 선지의 해답 : ③	$t = 0$에서 $p = 1.60$$t = 6$에서 $p = 2.40$ 중간인 $t = 3$에서 p는 산술평균값인 1.8 $p_A(3min) = 2p_0 - p(3) = 1.4 atm$ A의 소비량 = $1.4 - 1.2 = 0.2mol$ B의 생성량 = $\frac{3}{2} \times A$의 소비량 = $0.3mol$ 선지의 해답 : ②																		
96p 2줄 번호 : 17	해설	$d^6(Fe^{3+}), d^7(Co^{3+}), d^8(Ni^{3+})$	$d^5(Fe^{3+}), d^6(Co^{3+}), d^7(Ni^{3+})$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97p 2~5줄 번호 : 20	해설	평형 I 에서, $y_A = y_B = \frac{1-x}{2}$, $y_C = x$ $K_{p,1} = 9 = \frac{x^2}{(\frac{1-x}{2})^2}, \text{ 정리하면 } x = \frac{3}{4}$ 평형 II 에서, $y_C = \frac{2}{3}$, $y_A = y_B = \frac{1}{6}$ $a = K_{p,1} = \frac{y_C^2}{y_A y_B} = 16$ $\frac{3}{4} \times 16 = 12$ ① 12	평형 I 에서, $y_A = y_B = \frac{1-x}{2}$, $y_C = x$ $K_{p,1} = 9 = \frac{x^2}{(\frac{1-x}{2})^2}, \text{ 정리하면 } x = \frac{3}{5}$ 평형 II 에서, $y_C = \frac{2}{3}$, $y_A = y_B = \frac{1}{6}$ $a = K_{p,1} = \frac{y_C^2}{y_A y_B} = 16$ $\frac{3}{5} \times 16 = \frac{48}{5}$ ① 48 5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
119p c 선지 보기 번호 : 12	문제-본문	$\square. \frac{T_1}{T_2} = 0.625 \text{ 이다.}$	$\square. \frac{T_2}{T_1} = 0.625 \text{ 이다.}$
		수정 사유	보기 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정답 및 해설편 127~127p 번호 : 20	해설	② (○) 특허법 제33조 제2항, 제44조, 제132조의3, 제139조 제3항,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,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<u>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/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,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(대판 2005.5.27. 2003후182).</u>	② (○) 특허법 제33조 제2항, 제44조, 제132조의3, 제139조 제3항,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,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〔(註) 현행법상 3개월 이내〕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<u>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/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,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</u> (대판 2005.5.27. 2003후182).
		수정 사유	해설_오류
199p 1줄 ㄱ 보기 번호 : 32	해설	ㄱ.(○) 브라질 해류 → 남대서양 환류의 일원이다. (시계 방향 흐름, 서안 난류) 해답 : ⑤	ㄱ.(×) 브라질 해류 → 남대서양 환류의 일원이다. (반시계 방향 흐름, 서안 난류) 해답 : ③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